

「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·예술인·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 접수(2차) 공고

성남시는 노무제공자, 지역예술인,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·확대하고자 「2025년 성남시 노무제공자·예술인·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 접수(2차)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7일

성 남 시 장

1. 사업개요

- 지원대상: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·보험료 부과된 자
 -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*
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고,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
 - 노무제공자(14개 직종)*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

*노무제공자(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)(14개 직종)

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조종사, 방문강사, 골프장 캐디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, 소프트웨어기술자, 방과후학교 강사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기사

- ※ 법정 노무제공자 중 퀵서비스기사(배달노동자)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:
「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」 신청·지원
⇒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(<https://apply.jobaba.net>)에 신청
문의처: ☎031-270-9940(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)
- ※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 타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 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예술인: 성남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, 차액분만 추가 지원 가능
- ※ 지원 해당월 ~ 지급 완료일까지 요건 충족해야 지원 가능
예) 2025.4월 지원금부터 신청: 2025.4월~지급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함

□ 지원내용

○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* 이내에서,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% 지원

*직종별 월 지원상한액: 2025년 3인가구 중위소득(100%)(5,025,353원) 기준 산정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62호)

※ (예외) 기준보수 적용대상 직종은 별도 상한액 기준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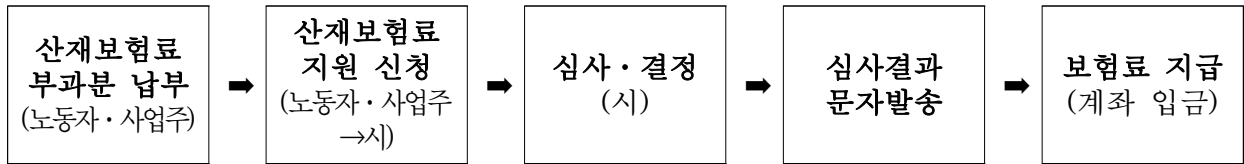
- 건설기계조종사: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월보수액 기준 산정
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80호)
- 예술인: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 1~12등급 중 6등급 월보수액 기준 산정
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67호)

| 연번 | 지원대상 노무제공자(舊 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직종 및 예술인 | 2025년 산재보험료 월 지원상한액(원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보험설계사 | 9,300 |
| 2 | 건설기계조종사 | 38,600 |
| 3 | 방문강사 | 12,260 |
| 4 | 골프장 캐디 | 10,620 |
| 5 | 택배기사 | 31,630 |
| 6 | 대출모집인 | 9,180 |
| 7 |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| 9,000 |
| 8 | 방문판매원 | 15,160 |
| 9 |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| 12,260 |
| 10 |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| 13,020 |
| 11 | 소프트웨어 기술자 | 10,670 |
| 12 | 방과후학교강사 | 12,450 |
| 13 | 관광통역안내사 | 11,090 |
| 14 | 어린이통학버스기사 | 29,730 |
| 15 | 예술인 | 14,550 |

□ 지원방법/체계

○ 지원방법: 산재보험료 개인별 부담(부과) 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(1~2개월 소요)

○ 지원체계



2. 신청방법

□ 신청시기(연 2회)

| 구분 | 접수기간 | 신청범위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차 | 2025. 4. 7.(월) 09:00 ~ 4. 18.(금) 18:00 [마감] | 2024. 10월 ~ 2025. 3월분 신청 |
| 2차 | 2025. 10. 13.(월) 09:00 ~ 10. 24.(금) 18:00 [금회] | 2025. 4월 ~ 2025. 9월분 신청 |

※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원 불가,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

□ 신청방법

○ 이메일: snlabor@korea.kr

○ 팩 스: 031-729-4979 (정상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 필수. ☎031-729-8734)

※ 수신 오류 및 수신 여부 미확인에 따른 접수 누락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.

○ 방문 또는 등기우편: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

(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, 평일 12:00~13:00 제외)

(등기우편 접수 시, 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)

□ 구비서류(해당 서식으로 작성)

① (공통) [*신청 대상별 서식 확인]

1)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
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3)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

· 노무제공자 신청 시: 제1호, 제3호 서식

· 예술인 신청 시: 제4호 서식

·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or 사업주가 대리 신청 시: 제2호, 제2-1호, 제3호 서식

② (공통) 본인 명의 통장사본

③ (별도) [*신청 대상별 서류 확인]

· 노무제공자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,
재직증명서(위촉증명서 등)

- 예술인: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,
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
- 10인 미만 영세사업주: 사업자등록증 사본,
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근로복지공단 발급),
사업장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
- 사업주 대리신청: 사업자등록증 사본,
대상자별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,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),
재직증명서(위촉증명서 등)

□ 신청 및 수령 자격

- 신청자격: 본인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가능(증빙서류 첨부)
- 수령자격: 본인(10인 미만 영세사업체는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)
- ※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(판결, 공증 등)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

3. 참고사항

- 신청서 및 각종 증명(빙)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에 대한 미부담(급여 미공제, 보험료 미납 등) 사실이 추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,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지원금 지급 완료 전 대상자의 이직·퇴직 등으로 계약조건이 변경·소멸될 경우 보험료 부과 내역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에도 고지한 기한 내에 구비서류 미제출(미보완) 또는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(미지원 등)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함
- 모든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4. 문의처

-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(☎031-729-8734)
-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관련: 경기도일자리재단(☎031-270-9940)
- 예술인 산재보험료 관련: 한국예술인복지재단(☎02-3668-0200)
-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관련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(☎1588-0075)